



事例 중심으로 본 환경보전 법규 질의·응답 해설 (연재Ⅱ)

최근 환경청 권혁진 법무담당관이 발간한 「사례 중심으로 본 환경보전법규 질의·응답해설」 중에서 질의·응답해설 부분을 발췌해 게재한다. <편집자 註>

Ⅳ. 하수처리장 공사실적을 방지시설 공사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1. 사례 내역

1. 질의 및 회신 근거

질의 : 국중건(업두) 제 88-025 호
('88.1.20)

회신 : 종합 31633-982

2. 질의 내용

환경보전법 제 47 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53 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업 (환경오염방지시설업) 의 등록을 필한 자가 시공완료한 공사실적은, 동법 제 49 조 제 1 항 6 호의 규정에 의거한 방지시설 공사실적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사실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3. 회신 내용

공사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방지시설업으로 등록한 자가 1 년 이상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취소할 수 있다.

4. 이 유

하수종말처리시설은 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 5 조 별표 4 에 의한 방지시설로 볼 수 없으나, 설계 및 시공방법에 있어서 하수종말처리시설과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처리시설이 동일한 방법에 의한다는 점 및 통상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입찰 참가조건을 방지시설업 등록업체 (환경, 수질) 로 제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환경보전법 제 49 조 제 1 항 제 6 호의 해석에 한하여 하수종말처리장 공사실적을 방지시설업 영업실적으로 인정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2. 해 설

가. 방지시설업의 등록제 채택

방지시설업이라 함은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방지시

설의 설계 또는 시공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업종은 환경보전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방지시설을 설계·시공하므로 그 능력이 우수해야 하며, 행정적으로 일정한 보호와 감독을 필요



로 한다.

따라서 보전법 제 47조에서는 “방지시설의 설계 또는 시공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등록된 사항중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여 등록제 실시를 선언하고 있다.

나. 등록취소 요건으로서의 영업실적

보전법 제 49조에서는 등록취소의 요건을 정하고 있는바, 동조 제 6호에는 등록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1년이상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를 동 취소요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방지시설의 중요성에 비추어 보아 1년이 지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1년이상에 걸쳐 아무런 영업실적이 없다면 영업행위 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이를 취소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만일 이런 경우 취소치 않고 방치하면 이런 부실한 방지시설업자의 부실한 설계·시공에 의하여 방지시설이 설치될 때 국가적으로 환경보전상 미치는 악영향이나 개인적으로 배출업소가 입는 피해가 클 것이기 때문이다.

다. 하수처리장 공사와 방지시설공사와의 차이점

하수종말처리시설은 하수도법에서 정하고 있고, 방지시설은 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형식적인 차이가 있으나, 양자가 모두 폐수를 대상으로 처리하고 있고, 처리시설 및 공정도 거의 동일하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차이는 없다고 판단된다.

현실적으로도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입찰참가조건을 방지시설업 등록업체에 한정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잘 증명한다.

왜냐하면 하수도법에서는 방지시설업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질오염 방지시설과 내용이 동일한 하수처리장 건설공사 입찰시, 보전법에서 정하는 방지시설업체를 활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라. 결 론

생활하수나 공장폐수 등은 폐수라는 점에서 동일하고 방지시설로서 동일한 생물화학적, 처리시설 또는 물리적·화학적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시설의 설계·시공을 모두 방지시설업자에게 일임하고 있는 실정이다.

단순히 하수종말처리시설이 환경보전법에 규정되어 있는 방지시설이 아니라는 점 때문에 하수종말처리공사 실적을 방지시설업체의 공사실적으로 인정할 수 없어 등록취소를 한다는 것은 부당한 일이다. 그러므로 하수종말처리장 공사실적을 방지시설업 영업실적으로 인정해 주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V. 수산물 냉장시설의 배출시설 해당여부

1. 사례 내역

1. 질의 및 회신 근거

질의 : 상진기업(주) 제 22 호

회신 : 수관 01254-10015 ('87.10.20)

2. 질의 내용

본 공장은 수산물 냉동, 냉장시설 공장으로 기존건물 1,342㎡에 냉장실 증축(439.5㎡)을 위하여 건축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던 바, 상업지역에는 공해공장의 건축허가가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단순한 냉장실 증축이 건축법상의 공해 공장의 증축에 해당하는지?

3. 회신 내용

환경보전법상의 배출시설로서 건축법에 의한 규제대상이 된다.

4. 이 유

해산물 냉동·냉장용 시설은 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식품포 제조시설에 해당되며, 그 시설규모가 세척시설의 경우 용적 2㎡이상 또는 시간당 용수용량이 1㎡이상일 경우에는 환경보전법상의 배출시설이 되기 때문에 건축법상의 공해공장에 해당되어 건축법에 의한 규제대상이 됨.

5. 참조 조문

건축법 시행령 제 66조 제 2장(별표 2)



2. 해 설

사례번호 I. 가. 1 “면도기 생산공정의 폐수 배출시설 해당여부” 및 I. 나. 9 “주거지역에서의 배출시설 변경허가 가능여부” 참조.

VI. 폐수재이용 시설의 배출시설 설치 허가대상 여부

◎ 사례 내역

1. 질의 및 회신 근거

질의 : 민원인 김근수

회신 : 수관 01254-7844

2. 질의 내용

공장의 압정공정에 사용되는 냉각수를 외부로 유출하지 않고 계속 순환시켜 재사용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계속 순환 사용하는

압연공장도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3. 회신 내용

압연시설이 동력 30HP이상일 경우에는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되며, 따라서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폐수를 방류하지 않고 재이용한다면 환경청장의 지칭 또는 승인을 받아 방지사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참조 조문

환경보전법 제 15조 및 제 15조의 2, 동법 시행규칙 제 13조 및 제 19조.

2. 해 설

사례번호 I. 가. 1. “면도기 생산공정의 폐수배출시설 해당여부” 참조.

새/기/술/새/상/품

열분해식 소각로

- 이메프사(社) -

이탈리아의 「이메프」사는 지난 40년간 여러 형태의 폐기물 소각로를 설계·제작해 온 회사로, 여기서 개발된 표준 열분해식 소각로·PSC 가열 열분해식 소각로·로터리 열분해식 소각로 등은 지역사회·병원·공장·도살장·연구소·항지 등에서 나오는 모든 형태의 고체 쓰레기를 소각시켜 왔다.

이러한 열분해식 소각로들은 에너지 회복을 위해 특수 설계되었으며, 이것은 열 회복 설비를 기존 시스템과 결합할 수 있거나 별개로 설치할 수 있다는 사실과 함께 중요한 특징중의 하나가 된다.

<제작회사>

IMEF S.R.L.

Via dei Santi, 149

25014 Castenedolo, Brescia

TEL: 030-2701961

FAX: 030-2701542

